

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
복리후생비 규정

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복리후생비에 관한 규정

| | | | |
|----|-------|-----|-----|
| 제정 | 2021년 | 12월 | 6일 |
| 개정 | 2022년 | 2월 | 22일 |
| 개정 | 2024년 | 2월 | 16일 |
| 개정 | 2025년 | 2월 | 13일 |
| 개정 | 2025년 | 7월 | 22일 |
| 개정 | 2026년 | 2월 | 12일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(이하“체육회”라 한다.)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제외한 보조금(예산) 및 자체예산에서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건강진단) ① 2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검진결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.

③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회가 전액 부담한다.

제3조(체육행사) ① 직원의 체력과 건강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운동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‘체육의 날’ 및 ‘체력주간’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.

② 체육의 날 및 체력주간의 행사는 연간 2~4회 실시하며, 실시금액은 구보조금(운영금)에서 지급하도록 한다.

제4조(피복비) 직원에 대하여 지도활동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활동복으로 하계 200,000원, 동계 400,000원 피복비를 지급한다. <개정 2024.02.16.>

제5조(급량비) ① 직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급량비를 지급한다. 단, 예산의 편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2.2.18., 개정 2025.2.13>

②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교통비) ① 직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교통비를 지급한다. 단, 예산의 편

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2.2.18.,개정 2025.2.13>

②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제7조(체력단련비) ① 직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150,000원 정액 지급한다.

<개정 2024.02.16.>

②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<신설 2022.02.18.>

제8조(하계휴가비) ① 직원에게는 매년 7월 급여일에 하계휴가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25.2.13>

②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③ 직원 휴가비는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년 기본급 인상 시 연동하여 지급한다.

[표-1]

| 직 급 | 지급년 (발령일 기준) | 산출내역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무국장 | | 정액 700,000원 |
| 지도자 | 1년이내 | 기본급의 10% |
| | 2년~3년 | 기본급의 13% |
| | 4년~5년 | 기본급의 16% |
| | 6년~7년 | 기본급의 19% |
| | 8년~9년 | 기본급의 21% |
| | 10년~11년 | 기본급의 24% |
| | 12년~13년 | 기본급의 27% |
| | 14년~15년이상 | 기본급의 30% |

<표개정 2024.02.16.>

제9조(명절휴가비) ① 직원에게는 매년 설날 및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5.2.13>

[표-2]

| 직 급 | 지급년 (발령일 기준) | 산출내역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무국장 | | 정액 700,000원 |
| 지도자 | 1년이내 | 기본급의 10% |
| | 2년~3년 | 기본급의 13% |
| | 4년~5년 | 기본급의 16% |
| | 6년~7년 | 기본급의 19% |
| | 8년~9년 | 기본급의 21% |
| | 10년~11년 | 기본급의 24% |
| | 12년~13년 | 기본급의 27% |
| | 14년~15년이상 | 기본급의 30% |

<표개정 2024.02.16.>

제10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①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(보조금)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
1.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
2.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

② 야간근로(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③ 단, 지도자의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대체 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.

제11조(장기근속수당) ① 장기근속수당은 체육회 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.

② 근속년수 3년 초과 직원부터 1년당 1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며, 상한선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제12조(관리업무보조수당) ① 직원 중 직급을 발령받은 자는 관리업무수당을 매월 급여일에 정액 지급한다.

②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[표-3]

| 직 급 | 사무국장 | 행정지도자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행정업무수당 | 400,000원 | 200,000원 |

<표개정 2024.02.16.>

제12조2(직급 및 직책수당) ① 사무국장에게 매월 급여일에 직급수당 100,000원, 직책수당 200,000원을 지급한다.

② 지도자 중 팀장(근속년수 10년 이상의 행정업무가 가능한 직원 1명)에게 매월 급여일에 100,000원 직책수당을 지급한다.

③ 근속년수 10년 이상이며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도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50,000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한다.

④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[조 신설 2025.07.22.]

제13조(연차수당) ①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(수당의 지급)에 의한 소정의 연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월차 수당(연가보상비)을 지급한다. 단, 예산의 편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② 퇴직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.

1. 연차수당 : 통상임금×1/209시간×8시간×일수

제14조(여비) ① 직원의 업무출장, 교육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5.2.13>

② 업무상 직원의 개인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시내 3만원이내,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제외한다.

③ 공무에 다른 근무지 외 출장 여비는 표-4 국내여비 정액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.

[표-4]

| 구 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 운임 | 일비 (1일당) | 숙박비 (1야당) | 식비 (1일당)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임원 | 실비 (특실) | 실비 (1등급) | 실비 | 실비 | 25,000원 | 실비 | 25,000원 |
| 직원 | 실비 (일반실) | 실비 (2등급) | 실비 | 실비 | 25,000원 | 실비 (상한액 : 서울특별시 100,000, 광역시 80,000, 그 밖의 지역은 70,000) | 25,000원 |

<표개정 2024.02.16.>

제15조(활동비) ① 직원(사무국장 자체예산, 지도자 사업비에서 지출)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활동비를 지급한다. 단, 예산의 편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<개정 2025.2.13>

②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.

| 직급 | 근무년수 | 산출내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무국장 | | 정액 200,000원 |
| 지도자 | 0년1월~3년 | 30,000원 |
| | 3년1월~6년 | 60,000원 |
| | 6년1월~9년 | 90,000원 |
| | 9년1월~12년 | 120,000원 |
| | 12년1월~ | 150,000원 |

제16조(정근수당) ① 직원에게는 예산(보조금)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 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| 직급 | 지급년 (발령일기준) | 산출내역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직원 | 2년 미만 | 기본급의 5% |
| | 3년 미만 | 기본급의 10% |
| | 4년 미만 | 기본급의 15% |
| | 5년 미만 | 기본급의 20% |
| | 6년 미만 | 기본급의 25% |
| | 7년 미만 | 기본급의 30% |
| | 8년 미만 | 기본급의 35% |
| | 9년 미만 | 기본급의 40% |
| | 10년 미만 | 기본급의 45% |
| | 10년 이상 | 기본급의 50% |

[조 신설 2026.02.12.]

부 칙(2021.12.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예산(보조금) 부족시 자체예산(이사회비)로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2.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예산(보조금) 부족시 자체예산(이사회비)로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24.2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.

제2조(시행일) 예산(보조금) 부족시 자체예산(이사회비)로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25.2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.

제2조(시행일) 예산(보조금) 부족시 자체예산(이사회비)로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25.7.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.

제2조(시행일) 예산(보조금) 부족시 자체예산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26.2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.